

## 2021년 제1회 담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회 담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일

담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제1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일반토목	6명

###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항, 4지 1선택형)

구분	과목수	시험과목(1·2차 시험)	시험문항	시험시간
시설(일반토목)	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총 60문항	60분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3 시험문제의 출제

---

시험전문기관 위탁 : 문제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4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출생자)

나. 성별 : 제한없음

다. 거주지 제한 : 아래 ①,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 예) 1986.11.01.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 응시 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 등) \*기준일: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직렬	직류	제 한 사 항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2)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기능사(2) :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해당 자격증(면허증)을 보유한 자 및 해당 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자격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마. 응시결격사유 등

- 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추가합격자 선발의 경우에도 해당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21. 1. 18. ~ 1. 20.	방문 및 우편접수	필기시험	1.25.(월)	1.31.(일)	2.5.(금)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 란에 게시

## 6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1)을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1. 1. 18.(월) ~ '21. 1. 20.(수) / 3일간

다. 접수장소 :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1층)

라. 접수방법

① 방문접수 : 근무시간 내(09:00 ~ 18:00)

② 등기우편 접수

- 우편은 접수마감일(1.20.) 근무시간내(18:00) 소인분까지 유효함

(단, 마감일 후 2일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마감일 근무시간내 접수번호 필히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 : 담양군 자치행정과 ☎ 380-3168 ~ 3169)

※ 우(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담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마. 제출서류

### 1)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9급(5,000원)

• 방문접수 : 담양군 수입증지를 담양군청 민원동 1층 열린민원과  
(9번 창구)에서 구입, 서류와 함께 접수

• 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3)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 4) 이력서 1부(붙임2)

### 5) 자기소개서 1부(붙임3)

### 6)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4)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 8)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1부

###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8), 9)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 7 가 산 특 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의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가’ 항과 ‘나’ 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지도사 연구사 8·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 자격증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舊)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舊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가점불가)

####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 (061-380-3580)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3)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는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접수,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담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자.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담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061-380-31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